

전주지방법원 2020. 10. 28 선고 2020가단1082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2020. 9. 23.

판결 선고2020. 10. 2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4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8. 1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[청구원인]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권태관

별지